

2025년도 제2차

기금운용심의회 회의록



- 일 자 : 2026. 2. 10.(화) 14:00
- 장 소 : 양캠퍼스 화상회의실

	간 사	의 장
결 재		

명 지 대 학 교

2025학년도 제2차 기금운용심의회 회의록

▣ 일 시 : 2026. 2. 10.(화) 14:00

▣ 장 소 : 양캠퍼스 화상회의실

▣ 참석위원 : 임연수, 신태수, 김시형, 김하영, 안경훈, 최만호, 강용민, 윤상준 (이상 8명)

▣ 불참위원 : 송재근

▣ 안 건 : ①2026학년도 본예산 기금 예산편성 ②적립금 자금운용 규정 제정(안) 심의 ③적립금 자금운용 투자지침서(안) 심의 ④ 특정목적적립금 세부내역 지정

▣ 회의 주요 내용

- 위원장: 간사에게 성원보고를 요청함.
- 간사: 2025학년도 제 2차 기금운용심의회 총원 9명 중 8명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.
- 위원장: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위원들에게 기금운용심의회 개회를 선언한 후, 간사에게 회의 안건 설명을 요청함.
- 간사: 첫 번째 안건인 2026학년도 본예산 기금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함.
 - 최근 10년간의 기금현황 추이에 대하여 설명함.
 - 2025학년도 추경예산 기금잔액이 전년대비 약50억 가량 증가한 사유는 대학혁신 국고 등의 증액으로 인한 사항이 반영됨을 설명함.
 - 2026학년도 본예산 기금잔액이 등록금 인상 및 비용절감 등을 통해 약 30억의 증가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설명함.
- 위원장: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만큼의 적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학교의 대략적인 감가상각 금액에 대하여 질의함.
- 간사: 매년 건물의 감가상각비가 대략 100억 정도이며, 현재 학교 운영상으로 해당 금액만큼 적립이 어려워 점차적으로 금액을 늘릴 예정임을 설명함.
- 위원장: 추가 질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2026학년도 본예산 기금 예산편성에 대한 위원들의 동의를 요청함.
- 출석위원: 2026학년도 본예산 기금 예산편성에 대하여 전원 동의함.
- 위원장: 첫 번째 안건이 출석위원 전원 동의로 원안대로 심의·의결되었음을 안내하고 두 번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.
- 간사: 두 번째 안건인 적립금 자금운용 규정 제정(안)에 대하여 설명함.
 - 교육부의 사립대학 기금운용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적립금 자금운용 규정을 제정하여 기금을 운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음을 설명함.
 - 적립금 자금운용 규정 제정(안)에 대하여 각 조항의 중요부분을 설명함.
- 위원장: 현재 규정 제정(안)으로는 예·적금 등의 안전한 상품에 투자한다고 가정

하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하여 질의함.

- 간사: 정기예금 이자율로 약 3%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음. 좀 더 위험성이 있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타대학 사례를 봤을 때 손실이 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 제정(안)에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음을 답변함.
- 위원장: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요청함.
- 김시형 위원: 어느 정도 가용금액이 적립이 될 때까지는 안정적 운영이 최우선이라고 판단된다고 답변함.
- 최만호 위원: 적립금 자금운용 규정인데 제3조에 “기금”과 혼용되어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통일 되어야 하는 부분은 아닌지 질의함.
- 간사: 회계상으로는 자산 계정으로 “기금”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으나, 교육부에서 정의한 명칭은 “적립금” 규정이다 보니 혼용되고 있음. 제 3조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혼선이 없도록 반영하겠다고 답변함.
- 신태수 의원: 제4조 적립금의 관리원칙에서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부득이하게 변경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으니 변경 가능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건의함.
- 간사: 기금 사용 목적 변경에 해당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문구를 추가해서 보완할 것을 답변함.
- 김시형 의원: 제10조 집행권한에서 기금의 집행은 대학본부 재무·회계부서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되지 않음에 따른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부서 명칭을 기재하는 것은 어떤지 건의함.
- 간사: 당초 기획예산팀과 회계팀을 포괄하여 표현했으나, 실제 집행 자체의 권한은 회계팀이므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답변함.
- 위원장: 제7조 자금운용의 방법에서 예적금, 채권에 추가하여 안정성이 있는 유가증권으로 상품을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400억원 정도가 적립이 될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예적금, 채권 정도까지만 규정 또는 지침서에 반영할 것을 건의함.
- 간사: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할 부분을 정리하여 별도의 안내를 드릴 예정이며,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반영하여 서면보고로 같음하는 것으로 답변함.
- 위원장: 두 번째 안건인 적립금 자금 운용 규정 제정(안)에 대하여 보완 및 수정하여 교무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에 위원들의 동의를 요청함.
- 출석위원: 적립금 자금 운용 규정 제정(안)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하는 것에 전원 동의함.
- 위원장: 적립금 자금 운용 규정 제정(안)에 대한 위원들의 동의가 있었음을 안내하고 세 번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.
- 간사: 세 번째 안건인 적립금 자금운용·투자관리 지침서 제정(안)에 대하여 설명함.
 - 적립금 자금운용 규정 제정(안)은 규정심의위원회 및 교무위원회 상정 대상이나, 적립금 자금운용·투자관리 지침서 제정(안)은 해당 규정의 하위 규정으로 기금운용심의회 자체심의 안건임을 안내함.

- 규정보다는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투자관리의 지침을 마련하는 것임을 설명하며, 각 조항의 중요부분을 설명함.

- 위원장: 세 번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요청함.
- 김시형 의원: 적립금 규정(안)의 제7조 자금운용 방법 조항의 투자상품 예시내역을 지침서에 추가하여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시함.
- 간사: 해당 예시를 추가하여 지침서에 보완할 것을 답변함.
- 위원장: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요청함.
- 위원장: 추가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세 번째 안건에 대하여는 적립금 자금운용 규정 제정(안)과 더불어 검토 및 수정보완하여 위원들에게 안내할 것을 요청함.
- 간사: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할 부분을 정리하여 별도의 안내를 드릴 예정이며,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반영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답변함.
- 위원장: 세 번째 안건인 적립금 자금운용·투자관리 지침서 제정(안)에 대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보완하는 것으로 안건 동의를 요청함.
- 출석위원: 적립금 자금운용·투자관리 지침서 제정(안)에 대하여 전원 동의함.
- 위원장: 적립금 자금운용·투자관리 지침서 제정(안)에 대한 위원들의 동의가 있었음을 안내하고 네 번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.
- 간사: 네 번째 안건인 적립금 임의특정목적적립금의 세부 하위항목 지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함.
 - 교육부에서는 임의특정목적적립금은 구체적인 목적 및 대상, 용도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하므로 세목관리를 하여야 하며, 추상적인 기금은 조성일 불가함을 안내하고 있음을 설명함.
 - 현재 임의 특정목적적립금의 하위 구분항목이 없으므로 기부약정서상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세부항목을 지정하고 결산명세서를 작성 및 공시하여야 함을 안내함.
- 위원장: 간사의 안건 설명에 대한 심의를 위해 위원들의 의견 및 질의를 요청함.
- 안경훈 위원: 세부항목 1번에서 4번 중에 4번은 교육과정지원기금보다는 교육지원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특정 과정을 지칭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표현은 지양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함.
- 위원장: 위원들의 동의 및 추가질의를 요청함.
- 출석위원: 일부 문구 수정 반영하여 임의특정목적적립금의 세부 하위항목 지정안을 심의하는 것에 전원 동의함
- 위원장: 위원들의 전원 동의로 네 번째 안건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었음을 안내함.
- 위원장: 2026학년도 제 2차 기금운용심의회 안건의 심의 및 의결이 모두 완료되었음을 선포하고, 15:20분 폐회를 선언함.

2026. 2. 10.

작 성 자 : 회 계 팀 장 장형근

